

일본 매스컴 판례 연구

秋吉健次(아키요시 겐지)

매스컴윤리간담회 전국협의회 고문

이 글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발행하는 <월간민방> 1997년 7, 8, 9월호에 연재된 “매스컴 월간판례연구 1·II·III”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명예훼손의 법적 구조와 기본적인 판례에 관하여

1. 머리글

방송, 신문, 잡지 등의 프로그램이나 기사, CM, 광고가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경제적 손실에 해당된다고 다투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의 성질, 판결의 요지, 사고방식,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판례를 해설하고자 한다. 명예훼손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형법 제 230 조)와 민법상의 불법행위(민법 제 709 조) 두 가지가 있다. 본고는 양자의 법률상의 구조와 기본적인 판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2. 형사상의 명예훼손죄

형법 제 230 조 제 1 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진위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도기관이 명예훼손에서 면책되는 것은 형사책임의 경우 형법 제 230 조의 2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경우의 특례’에 의해서 인데 동조 1 항은 ‘전조 제 1 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또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조 제 2 항은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있는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가산 시사사건의 최고재판소 대법정판결(1969년 6월 25일)은 ‘형법 제 230 조의 2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헌법 제 21 조에 의한 정당한 언론의 보장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들 양자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비록 형법 제 230 조의 2 제 1 항에서 말하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었던 것으로 오신하고, 그 오신한 것에 관해 확실한 자료, 근거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범죄의 고의가 없으며 명예훼손의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와는 달리 위에서와 같은 오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릇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당 재판소의 전기판례(1959년 5월 7일, 제 1 소법정판결)는 이를 변경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판결의 전기와 같은 판단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는 등으로 판시, 형사상 상당성의 면책사유를 인정했다.

3. <월간 펜>과 공공의 이해

잡지 <월간 펜>은 연속특집을 기획, 여러 가지 면에서 종교법인 창가학회를 비판했다. 1976년 3월호에 “4 중 5 중의 대죄 저지르는 창가학회”, 동 4월호에 “극악대죄 저지르는 창가학회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 창가학회의 池田大作 회장(당시)의 사적 행동, 특히 여성관계 문제를 취급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하여 동 지 편집국장이 기소되었다.

피고인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형법 제 230 조의 2 의 면책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심 도쿄지방법판소(1978년 6월 29일)와 2 심 도쿄고등재판소(1979년 12월 12일)는, 본건의 적시사실이 동조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피고인측은 상고했으나 최고재판소 제 1 소법정(1981년 4월 16일 판결)은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 제 1 심판결 및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제 1 심법원에 환송했다.

‘사인의 사생활상의 행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 및 이를 통한 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에 따라서, 그 보도내용이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혹은 평가의 자료로서 형법 제 230 조의 2 제 1 항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만 한다’고 한 후, ‘본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의해 적시된 池田 회장 등의 앞에서와 같은 행상은 형법 제 230 조의 2 제 1 항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를 한 종교단체내부의 단순한 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4. 민사상의 명예훼손

민사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민법 제 709 조(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 · 효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 제 710 조(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한 경우와 재산권을 해한 경우를 불문하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행함을 요한다’, 제 723 조(명예훼손에 있어서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재판소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를 회복하는데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등의 법조문이 적용된다.

그런데 명예란 무엇인가. 극히 최근의 판례를 보면, 로스의혹을 보도한 스포츠닛뽕신문사건의 최고재판소 제 3 소법정판결(1997년 5월 27일)은 ‘불법행위의 피해침해이익으로서의 명예(민법 제 710 조, 723 조)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이며 (최고재판소 1986년 6월 11일 대법정판결), 명예훼손이란 이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북방저널사건 최고재판소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진실이라고 믿는 상당성의 판례이론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경우,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가산 시사사건의 최고재판소판결로 확립되었으나 민사상의 경우, 그보다 앞서 요리우리신문사건의 최고재판소 제 1 소법정판결(1966년 6월 23일)에 의해 확립되고 있다.

요리우리신문은 1955년 3월 3일자 조간 사회면 논란은 "2월 선거의 내막", "서명광이며 살인전과"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포함한 3명의 중의원의원 후보자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민사상의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을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만일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결국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이러한 해석은 형법 제 230조의 규정의 취지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5. 상당성의 법리

진실의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민사, 형사의 2개의 전기 최고재판소판결 사이에는 문언상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다.

문언상으로 보는 한 형사쪽이 면책의 요건이 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면책범위를 좁게 했는지의 여부를 두고 문제가 되었다. 북방저널사건 최고재판소 대법정판결(1986년 6월 11일)은 '형사상 및 민사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오신하게 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의 행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여 어느 쪽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더욱이 동 사건판결은 사전금지에 관한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II.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의 매체측의 대응에 관하여

1. 보도에 의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

보도에 의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당한 언론매체는, 당해보도가 원고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①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계가 있고 ②공익을 도모할 목적이었을 경우에는 ③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증명되었을 때 또는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오신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이하, ③을 '진실증명과 오신상당성'으로 한다)'라는 위법성 조각의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당해보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기사의 의미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기사에 대한 일반독자의 보통 독해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최고재판소 1981년 7월 20일 판결. 도쿄신문 “多摩의 상하이사건”)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판결문을 보면 위법성조각의 세 가지 요건을 주장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보인다. 범죄보도는 ①, ②의 경우 별로 문제없이 인정되고 있으나 ③의 ‘진실증명과 오신상당성’의 입증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취재원비닉과의 관계 때문에 회피하거나 또는 주장·입증할만한 근거가 빈약한 경우 등이다.

전자의 경우 1심패소 후의 2심에서는 취재원비닉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의 빠듯한 부분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여 역전승소하는 사례가 중앙지에서 많이 보인다. 그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서는 뒤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 경우 기자의 취재메모의 존재가 중요하다.

후자의 경우, 예를 들면 로스의혹보도의 경우, 보도가 확대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경찰의 공식발표나 자사의 독자취재 외에, 일부 언론매체는 TV의 와이드쇼의 보도, 주간지의 기사를 근거로 기사를 재구성하기도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도 없고, 누가 어떠한 취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주장하거나 입증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소송당사자로부터 들은 일이 있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형사피고인이라는 것,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는 것, 다른 언론매체의 같은 보도에 의해 이미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본건보도로 더 이상 평가가 저하되는 일은 없다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단을 갈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2.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

범죄보도에 있어서는 통장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라고 되어 있으나 관련보도로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데일리스포츠 칼럼사건에서 도쿄지방법재판소(1995년 3월 31일 판결)는 ‘본건기사는 전체적으로 원고가 호모라는 인상을 일반독자에게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개인의 성벽에 관한 사실을 내용으로 한 본건기사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본건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여 본건기사의 집필자와 게재신문사에 손해배상을 명했다.

3. 경찰발표와 언론매체의 책임

경찰의 공식발표를 입증취재없이 그대로 보도한 경우, 동 발표에 불법행위가 없는 항 통상 언론매체는 면책된다.

예를 들면, 衫並경찰서에 체포된 용의자가 동 경찰서 수사관의 공식발표행위, 신문사의 기사게재행위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여 동경도와 신문사 4개사(아사히신문사,

마이니찌신문사, 산업경제신문사, 일본경제신문사)를 제소한 사건이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쿄지방법재판소(1990년 3월 23일 판결)는 ‘수사관에 의한 피의사실, 기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판단은 증거략(證據略)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경찰발표에도 불법행위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동 발표를 게재한 각 신문사에 대해서는 ‘본건 각 기사게재의 사실이 공소제기 전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여준 바와 같고 이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하겠으며 동시에 그 내용과 표현으로 보아 본건 각 기사의 게재행위도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아래 행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공공의 이해, 공익목적의 인정, 다음과 같이 상당성도 받아들여 신문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범죄수사를 하는 경찰서의 수사관이 수사결과에 근거하여 판명된 피의사실을 기자발표장소 등에서 공개한 경우에는 그 발표내용에 의문을 갖게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 당해사실을 믿었다고 하여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와 같은 공식발표가 있었을 경우 취재를 하는 보도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이 광범위한 권한을 구사하여 수사활동을 진행, 증거자료 등 충분한 근거에 의거하여(반대증거 등과도 비교감안하고) 당해 피의사실에 관해 상응한 확신을 얻은 다음 발표하기에 이른 것으로 인식, 그것을 진실인 것으로 알고 보도했다고 하여도 무리가 아니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항상 사실의 진위에 관해 독자적으로 조사·확인하는 일을 의무화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 각 신문사의 본건 각 기사게재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경찰발표와 공익목적

그런데 경찰발표에 불법행위가 없고 이를 그대로 게재한 신문사가 불법행위책임을 추궁받은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山梨(산리)현 경찰의 접골원 경영자 등의 체포, 동 보도사건에서 1심 甲府지방법재판소(1985년 1월 30일 판결)는 경찰발표에 불법행위가 없이 그것을 그대로 게재한 신문에 대해, 일부 기사는 공익목적의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5개신문사 (아사히신문사, 마이니찌신문사, 요미우리신문사, 산업경제신문사, 山梨일일신문사)에 손해배상을 명했다.

그러나 2심 도쿄고등재판소(1987년 3월 31일)에서는 5개 신문사에 불법행위가 없다고 하여 5개 신문사의 1심패소 부분을 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상고심인 최고재판소(1991년 10월 25일)는 2심판결을 지지했다.

1심은, 기사가운데 “악덕접골사 형제의 체포 등”(요미우리신문사), “접골원의 악덕형제”(마이니찌신문사), “무법접골원을 적발 경영자 형제를 체포”(산경), “악덕접골원을 적발”(山梨일일) 등의 부분은 ‘모두 원고들은 피의자로 하고 있는데 불과한 공식발표의 객관적 사실의 발표 범위를 넘어 본건 각 피의사실과 함께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을 인격결함자로 하여 나쁜 평가를 가하고 있어 지나쳤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실추되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독자의 관심을 끌려고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각 기사는 피고신문사에게 있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신문사의 위 기사의 부분에 관한 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피고 각 신문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조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했다.

2 심은 '각 기사는 모두 원고들과 관련있는 범죄의 피의사실 및 이와 미접하게 관련된 사실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내용은 진실인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또는 그 내용과 표현방법으로 보아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고 '각 기사의 게재는 위법성이 없으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III.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의 매체특성에 의한 면책의 유무

1. 매체특성에 대한 고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당한 언론매체는 당해보도가 원고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키지 않았으며 따라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위법성조각의 세 가지 요건(앞에서 이미 해설)을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로스의혹보도 소송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의 세 가지 요건을 주장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눈에 띄었는데 그 가운데 스포츠지, 석간지의 경우 그 특성으로 보아 그 보도가 피보도자(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1, 2 심 모두 판단이 갈렸는데 최고재판소 제 3 소법정(1997년 5월 27일 판결)은 석간지의 매체 특성을 긍정한 2 심 판결을 파기, 도쿄고등재판소에 환송했다.

2. 매체특성을 긍정

이러한 매체특성을 판결이 긍정한 것으로는, 예를 들면 도쿄스포츠·예능리porter 'M 피고 차입품 횡류로 특별대우' 보도사건에서 도쿄지방법판소 민사 제 25 부(1992년 9월 24일 판결)는 다음과 같이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 N의 리포트기사와 같은 유형은 사회현상을 오로지 독자의 세속적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재미있고 우스꽝스럽게 써대는 특성이 있는데 도쿄스포츠의 본건 기사란도 그러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는 세인의 평가가 정착되고 있어 독자는 그 기사란의 기사에 관해 진실인지의 여부에는 관심없이 오로지 통속적인 흥미를 돋우는 오락기사로 알고 일독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다. 그리고 진지한 사회생활의 영위에 의해 얻어지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는 이러한 유형의 신문기사에 의해서는 조금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또한 경험법칙이 잘 가르쳐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의 기사란에 앞서와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고 해서, 당시의 원고가 처해있던 상황을 아울러 고려하면 기사내용의 진실여부를 검토할 것까지도 없이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훼손 혹은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매체특성을 부정

이러한 법리가 통용된다고 하면 스포츠지는 어떤 것을 보도하든 명예훼손이 거의 성립되지 않게 되는데 도쿄스포츠는 이 판결이 있는 직후 별도의 사건에서 재빨리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도쿄지방법재판소 민사제 14 부(1992년 12월 25일 판결)는 다음과 같은 논지로 이를 부정했다.

‘피고는, 본지의 독자는 기사가 진실인지의 여부 등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통속적인 흥미를 돋우는 오락기사로 읽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지와 같은 이른바 스포츠 신문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본건과 같은 사회적인 기사에 대해서는(이른바 연예 가십란과 동렬로 논할 수는 없다), 일반독자는 기사의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생각하고 읽는다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본건과 같은 기사에 대해서까지 피고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보도기관으로서의 신문사에게 있어서는 자살행위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앞서의 1심(민사제 25부)판결에 대해 2심 도쿄고등재판소 제 4 민사부(1995년 8월 31일 판결)는 ‘항소인의 소내규칙위반행위의 보도가 항소인의 인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며, 항소인이 형사피고인의 입장에 있다는 사실, 피항소인 N이 집필하는 예능리포트기사가 통속적인 흥미를 돋우는 오락성이 높은 것이라는 등의 사정에 의해 위의 결론이 좌우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원판결의 이 점에 대한 판단은 시인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의 지불을 명했다.

4. 최고재판소는 매체특성을 부정, 파기환송

한편 석간 후지·추리작가 ‘M 자포자기 증언나갈꺼야’ 보도사건에서 도쿄지방법재판소 민사 15 부(1992년 10월 16일 판결)는 ‘본건기사가 게재된 석간 후지는 이른바 석간지로서 퇴근길의 샐러리맨 등을 대상으로 오로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제목 등을 궁리하여 주로 흥미본위의 내용으로 된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사에 대해서는 일반독자도 그러한 오락본위의 기사로 알고 읽고 있는 실정이다. 본건기사도 미국의 사법당국이 총격사건에 대해 원고를 살인죄 등으로 기소할 방침을 굳혔다고 하는 보도와 관련시켜 추리작가에 의한 단순한 추리 혹은 억측을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과장하여 취급한 데 불과하며 일반독자에게도 이른바 로스의혹사건의 중심인물로서 그 언동이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던 원고에 관한 새로운 흥미본위의 기사의 하나로 읽혀진 데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당시 이미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상당한 정도 저하되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반독자로부터 위에서와 같은 평가를 받는데 지나지 않는 기사이며 더구나 단순한 추리 혹은 억측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이 명확한 본건기사가 게재배포 되었다고 해서 원고의 사회적 지위가 이 기사에 의해 더욱 더 저하되는 것은 아니며 본건기사에 의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 도쿄고등재판소 제2민사부(1995년 2월 23일 판결)는 1심판결을 그대로 지지했으나 상고심(앞에서 기술)은 원판결을 파기, 도쿄고등재판소에 환송했다.

최고재판소는 원심이 청구를 기각한 판시이유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인 석간지의 특수성을 긍정한 점은 '시인할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어떤 기사의 의미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기사에 대한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은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만 한다'는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1956년 7월 20일 판결(앞에 기술)을 인용한 다음 '비록 당해신문이 주로 흥미본위의 내용으로 된 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편집방침으로 하고 독자층도 그 편집방침에 대응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신문이 보도매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상, 그 독자도 당해신문에 게재되는 기사가 한결같이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기사에 어느 정도의 진실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 게재기사에 의해 기사의 대상이 된 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와는 달리 본건기사가 상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게재된 신문의 편집방침 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전기판단에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된 위법이 있으며 이 위법은 원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이 점을 언급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며 그 나머지 논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것까지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스포츠지, 석간지의 매체특성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는 사례에 관하여 이 밖에 판결이 시인하는 것으로는 대판일일신문사건(도쿄지방법재판소 민사제 39부 1995년 2월 28일 판결), 부정하는 것으로는 報知신문 등 사건(도쿄지방법재판소 민사제 35부 1994년 8월 23일 판결), 新大阪신문사사건(도쿄지방법재판소 민사제 1부 1994년 10월 17일 판결), 大阪日日신문사건(도쿄지방법재판소 민사제 4부 1995년 7월 31일 판결) 등을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의해 이 문제는 매듭을 지은 셈이다.